

소프트웨어 총판계약 분쟁 - Distribution 계약 Termination 후속 단계 s/w 저작권자, 총판

Distributor, 최종 구매자 End User 의 3자 법률관계



## 1. 계약관계 및 분쟁의 개요

라이선스 대상 S/W 의 소유권자 미국기업 Ansys 사는 영국기업 SCL 과 영국에서 S/W 판매권을 부여하는 distribution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SCL 은 End User 에게 SW 공급하고 Ansys (Licensor), SCL (Distributor), End User (Licensee) 3 당사자 사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습니다.

Distribution 계약에 따라 SCL 은 end user licensee 로부터 license fee 를 직접 받았고, 그 금액의 약 65% 정도를 licensor Ansys 에게 license payments 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자기 수입으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으로 license fee 를 얼마를 받든지 그 중 65%라는 정률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distribution 계약을 1996. 12. 31. Termination 한 후 distributor SCL 에서 계속하여 받은 license fee 처리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 2. 쟁점

계약서에서는 termination 후 계속하여 받은 license fee 에 대한 distributor 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대 지급범위를 12 개월 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 부족합니다.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for any reason, Ansys and [SCL] will work co-operatively together and with any new distributor appointed for the Territory to transfer purchase orders, license agreements, and any Support obligations and to resolve any other issue which may arise from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If [SCL] has not materially breached any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has paid all amounts owed to Ansys, Ansys and [SCL] will negotiate in good faith to determine

an equitable payment to [SCL]. Such payment will be equal to a portion of the lease and maintenance fees collected during the twelve (12) month period immediately following the Termination Date for licenses entered into by [SCL] and Ansys on or before the Termination Date.

이 상황에서 Licensor Ansys 는 distribution 계약종료 후에는 현지 distributor SCL 이 end user licensee 로부터 license fee 를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그 전액을 Licensor Ansys 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distributor SCL 는 여전히 그 중 license payments 만 주면 되고, 약 35%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 **3. 영국법원 판결**

영국법원은, (1) distribution 계약종료로 인해 End user 와 체결한 개별 license 계약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2) 기존 라이선스 계약이 SCL 에서 새로운 distributor 로 자동 교체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 Licensor 와 distributor 사이 distribution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end user licensee 들은 license fee 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SCL 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 distribution 계약종료 후에는 계약조항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 SCL 이 license fee 의 수령을 계속하는 것으로부터 종래와 같이 license payments 를 Ansys 에게 지급할 묵시적 약정을 인정하거나, (5)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SCL 이 Ansys 에게 license payments 를 계속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istribution 계약이 termination 되었음에도 distributor 가 사용자로부터 license fee 를 계속 받고, 그 다음 미국본사에 license payments 도 지급해야 한다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 4. 시사점

Distribution 계약종료 후 존속하는 license 관계에서 distributor SCL 의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영국법원 판결은 distributor 지위 상실로 존속 중인 licensee 계약상 지위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래와 똑같이 license fee 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부터 종료된 계약과 같이 일정한 license payment 만을 지급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CAD/CAE 소프트웨어 외국 s/w 업체와 distribution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의 영업을 통해 상당한 고객을 확보한 후 시장이 안정되자 외국 업체가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계약종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국내회사에서 그동안 투입한 영업노력과 시장개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termination 후 당사자의 권리의무 조항, end user 와 사이에 체결한 별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계약종료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거둘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본 사건에서도 라이선스 계약의 이전이나 추후 처리과정에 SCL 이 일정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i) all licence agreements would be transferred to a new distributor; (ii) between termination and the finding of a new distributor all fees would be collected for the benefit of Ansys and the new distributor, and all obligations of SCL under the licence agreements would be carried out by Ansys; (iii) a payment would be made to SCL of a specific proportion of the fees collected over the 12 months from termination or as fixed by some independent third party.

국제계약, 영문계약, 계약분쟁, 손해배상, 민형사소송,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